창업진흥원 공고 제2023-058호

「2023년 인바운드 기술창업자 유치 프로그램」 주관기관 모집 공고

한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자본 유치를 지원하는 「2023년 인바운드 기술창업자 유치 프로그램」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0일 창업진흥원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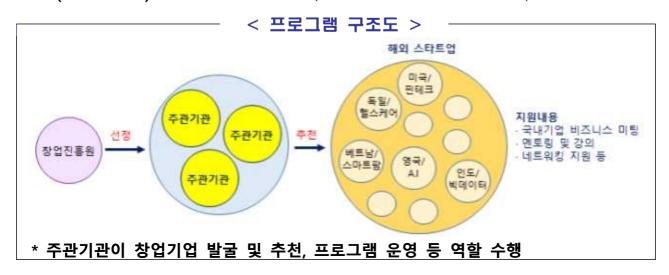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한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자본 유치 도모

□ 선정규모 및 지원예산

- (선정규모) 3개사 내외
- **(협약기간)** 2023년 11월 ~ 2024년 2월 (예정)
- (지원예산) 총 1.5억원 이내 (주관기관당 50백만원 내외)

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○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 및 인바운드 프로그램 관련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, 대학, 민간기관(단체) 등

< 주관기관 신청자격 >

구분	신청자격
공공기관	 ▶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4조(공공기관)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, 지자체 출자・출연 기관 ▶ 『지방공기업법』 제2조(적용범위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▶ 『지방출자·출연법』 제2조(적용대상 등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대학	 ▶『고등교육법』제2조(학교의 종류)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* 교육부 "2023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"에 해당하는 대학에 한함(교육부, '22.6.3.발표) ** 본교 및 분교(캠퍼스 포함),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불가 ▶『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』제3조 1, 2, 3, 3의 2호에 해당하는 기관
민간기관 (단체)	 ▶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제2조(정의)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▶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제2조(정의)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▶『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』제2조(정의)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등 기술사업화및 교육등 전문회사 ▶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, 협회·단체등 민간기업및 단체 - 단, 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이 "B" 이상이어야함 ★『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2조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내에 평가한유효기간 내회사채(또는 기업어음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(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, 등급평가일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)기준

○ **(신청제한)**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

< 주관기관 신청제한 >

- ①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-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 - * 단,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가능
-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
-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-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⑥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'협약해약'판정을 받은 경우
-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신청요건

- (창업지원 전문성)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 및 인바운드 프로그램
 운영이 가능할 것
 -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창업기업 Pool을 보유
 - 한국 창업생태계 진출 관련 전문성 및 창업기업 지원 경험 보유
- (인력구성) 프로그램을 운영할 총괄책임자(겸직 가능) 1인과 전담 인력(본 사업 참여율 100%) 1인 이상으로 구성
 - 총괄책임자는 창업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로 선임(1인)
 - 전담인력*은 <u>영어 능통자**이며 창업관련 경력 3년 이상</u>인 자로 사업 운영 전반의 필요한 기능 수행(최소 1인 이상)
 - * 전담인력은 국내외 창업지원, 글로벌 연계 사업 등 관련 경력을 보유한 신청기관 소속 실무 담당자로 구성
 - ** TOEFL, IELTS, TOEIC·TOEIC Speaking test 등 공인어학점수(만료 성적 가능) 혹은 영미권 국가 체류·학사학위 등 이에 준하는 영어 회화 능력 보유자
- *** 공고기간 내 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울 경우,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기재하여 제출

3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

- < 주관기관 주요 역할 > -

구 분	전담기관(창업진흥원)	주관기관
주요역할	추진계획 수립주관기관 선정·점검·정산협약 및 사업비 지급대외 대응	•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• 해외 창업기업 추천·선정·지원·괸리 • 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

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- 해외 창업기업 대상 한국 창업 생태계 경험, 국내 기업(대기업, 창업기업 등)과 비즈니스 미팅, 멘토링 및 강의, 네트워킹 등 운영
 - (분야별 전략컨설팅) 핀테크, AI, IoT 등 창업기업 분야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창업기업 수요에 맞는 전담 지원
 - (라운드테이블·강의) 창업생태계 교류, 한국 투자 유치 전략 및 동향,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한 세무·법무 등
 - (네트워킹) 국내 기업 견학(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, 현대자동차 제로원 등) 및 그랜드챌린지 등 국내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
 - (법인설립 지원) 희망 시 '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(OASIS)' 지원

② 해외 창업기업 추천 · 선정 · 지원 · 관리

-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창업기업 추천·선정 및 국내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, 지원, 관리
 - (선정규모) 해외 창업기업 10개사 내외 (주관기관당 3~4개사)
 - (지원기간) '23.11. ~ '24.2. (약 4개월)

- (해외 창업기업 자격)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(①, ② 모두 충족 필수)
 - ① 국내로 본사 이전, 지사 설립 등 및 글로벌 확장 계획을 보유한 해외 창업기업
 - ② 국내 입국하여 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창업기업
 - * 주관기관 추천기업 대상 최종 선정평가 운영 예정

③ **기日**

- (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) 해외 창업기업 대상 국내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
 - 인바운드 관련 공공·대학·민간 등 각 분야 전문가 구성
 -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아젠다 발굴 및 회의 운영

4 신청 · 접수

- **(신청기간)** 2023. 9. 20.(수) ~ 2023. 10. 16.(월) 15시까지
- *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 'K-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'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* <u>신청··접수 마감일 15:00 정각에 접수가 마감</u>되며, 15: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 (1단계(약관동의) 이상 저장 과제)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:00까지 작성항목 수정, 사업 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. 마감시간 15: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
- * 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
- (접수방법)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 온라인 신청
 - *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여야 하며, 소속기관 정보에 신청기관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

< K-Startup 신청방법 >

1단계	2단계	3단계		4단계
K-Startup 로그인 (회원가입)	사업신청관리 (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시스템)	사업신청 (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)	\Rightarrow	접수완료

* (제출서류) ①제출공문 1부, ②사업계획서 1부, ③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업로드 (단, 업로드 용량 100MB 이하)

5 평가 · 선정

□ 평가 · 선정(안)

< 주관기관 선정평가 운영절차 >

발표평가) 토, ├등

최**종선정** (~'23.10.31.) 개별통보

- *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운영절차 및 일정 변동 가능
- (요검검토 및 서류평가) 모집기준 부합여부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 - * 신청·접수가 선정규모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서류평가는 생략될 수 있으며, 서류 평가 결과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
- (발표평가)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통과 대상자 중 3개사 내외 선정
 - * 발표평가 결과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최종선정에서 제외
 - **평가시간**: 25분(발표 15분, 질의응답 10분)
 - * 발표는 신청기관의 장 또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평가시간은 지원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
- (평가기준) 기관 현황, 사업수행 역량, 창업지원 전략, 창업지원 실적,
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충평가

< 서류 및 발표평가 기준(안) >

구분	평가항목				
	기관 현황	전담인력의 적정성,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및 활용 계획	20		
서류	사업수행 역량	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, 기관의 전문성, 사업비 구성 및 사용 적정성	40		
평가	창업지원 전략	해외 창업기업 발굴 및 추천 계획, 기업 지원관리 계획의 효율성	30		
	창업지원 실적	창업지원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	10		
합계 1					
	기관 현황	전담인력 활용 방안, 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운영 의지	20		
발표	사업수행 역량	프로그램 운영 계획, 국내외 인바운드 전문가 협업 및 지원 계획	40		
평가	창업지원 전략	창업기업 발굴 선정 지원 관리 방안, 지원 전략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	30		
	성과관리 방안	성과창출 방안, 후속지원 전략 등	10		
합계 1					

* 상기 평가 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- (최종선정) 평가결과,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 사업운영
 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
 - 위원회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 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
 - 최종선정 예정 기관에 대한 최종 확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과장· 허위가 발견될 경우 탈락 처리하고 차순위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
 - * 최종선정된 주관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6 유의사항

-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 - * 신청·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 자료의 수정 및 보완, 교체, 추가 제출 등은 불가함
- 사업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서상의 대표자란에도 필히 신청기관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함
- 선정 이후 평가과정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신청요건
 미충족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협약체결이 취소될 수 있음
- 전담인력 구성요건 등 "예정"으로 하여 신청 및 선정이 된 경우
 선정 통보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 - *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는 협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관련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 가능
-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
-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중기부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시,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
 사업 선정 후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7 기타 참고사항

□ 사업신청 문의

구분	내용
신청·접수 시스템(K-Startup) 문의	국번없이 1357
차어지층 익/으여기과\	inbound@kised.or.kr
창업진흥원(운영기관)	02-2039-1607, 1634, 1685

□ 주관기관 사업비 기준

구 분	세부 내용	비고
창업프로그램 운영비	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멘토링, 자문, 교육 등	-
인건비	전담인력 인건비 및 겸직인력 수당 등	-
일반수용비	창업기업 모집·선정을 위한 평가비용, 수당 및 소모품비, 홍보비 등	-
여비	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 여비	-
회의비	본 사업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등	-